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34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김선민·김준형·황운하

박은정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김 윤 · 신장식

김재원 • 전진숙 • 정동영

문진석 · 장종태 의원

(149]

제안이유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동이 세 차례 학대신고에도 불구하고 학대현장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보호자의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하였음. 같은 해 6월 천안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약 7시간 동안 여행용 트렁크가방에 가두는 잔혹한 행위로 사망케 한사건이 있었음.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4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함. 가해자의 약 85%가 부 모라는 점에서 은폐되기 쉬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특성상, 언론이 주 목한 일부 사건 외에 대부분의 아동학대사망사건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더불어, 해당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음.

현행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미흡했던 한계가 있음. 과거 몇몇 국회의원과 민간의 주도로 <이서현보고서(2014)>, <은비보고서(2017)>를 작성하여 제도개선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 역시 조사체계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유사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영국에서는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라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정부 주도로 전문가들이 2년여간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2004년 아동법」을 제정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킨 바 있음.

이에 총리 소속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법령 등의 개선방안과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 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해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3조).
- 다.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 정해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27조까지).
- 라.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개선,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아동학대 대응·아동보호 체계 관련 대책 수립 등 조치 를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안 제28조).
- 마.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이행계 획 및 이행내역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을 명확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 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2.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 3.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 4. "아동학대사망사건"이란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 피해를 입어 살해되었거나, 사망에 이르렀거나,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2018년 1월 1 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중에서 제3 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

정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 · 분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을 수립·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조사대상 사건 선정
- 2.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 · 분석
- 3. 아동학대사망사건과 관련한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의 대응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 4. 아동학대사망사건 발생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 5.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 6. 제4호의 개선방안 및 대책 이행계획 확인ㆍ점검
- 7. 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 법의학 전공자 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수사 · 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 아동·아동학대·아동복지·아동인권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 5. 아동·아동학대·아동복지·아동인권 등 관련 단체·기관의 대표 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⑤ 위원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국무총리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⑥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비상임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

- 의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2.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제11조(위원의 겸직 및 정치활동금지) 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의 당원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4.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에 직접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학대사망사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아동학대사망사 건의 사망 아동 또는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아동학대사망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아동학대사망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 총리가 임면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위원장 이 임면한다.
 - ⑤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 ⑥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⑦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

- 여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 제1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아동학대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회 제1절 조사

- 제19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조사대상자 ·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2. 조사대상자·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에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제4 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 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ㆍ정보 조회
 - 5.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아동학대 현장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받은 개인 또는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 제130조제1항, 제131조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로부터 조사사항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 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① 위원회가 제9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및 제15조의2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21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청문회

제22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 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23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 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 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24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따라야 한다.
 - ② 위원회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다.
- 제25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 제26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 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아니한다.
- 제27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아동학대사망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조사 ·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제28조(조사·분석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조사·분석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별도의 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 ③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망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과 관계된 사실정보
 - 2.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 조치
 - 3. 아동학대사망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등 조치

- 4.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 수립 관련 조치
-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 6. 위원회의 활동기간 만료일 이후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등 계획
- ④ 위원회는 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 ·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망 아동, 조사대상 자, 참고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기관등의 이행실태 확인 · 점검

- 제29조(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①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3개월 이내에 그 수용여부 및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2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6개월 이 내에 그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후 이 행상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나 이행상황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고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3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1조(비밀준수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 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 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 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4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망 아동·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 ·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

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 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6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벌칙

- 제37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 4.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

니한 감정인

-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 감정인
- 6.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 한 자
-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망 아동,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 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 2.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 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 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정보의 조회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회신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려 한 사람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